

토목건축공사업

■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8.5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6.07.20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등급 이상	D등급
토목건축공사업	1,569,500원	8.5억원	200좌 (313,900,000원)	225좌 (353,137,5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4.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